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 방안이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
- ▲ 공항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업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이동 시 유의사항

- 신규 외국인력은 송출국의 송출유예(9개국) 및 항공기 결항·중단(7개국), 14일 자가격리로 인한 취업교육 연기 등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이 유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력수요가 긴급한 사업장은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자로 대체고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특례자는 공항도착 후 전용버스로 인도장소로 이동 예정이며, 인도장소에서 사업장 이동시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 후 복귀자는 공항 도착 후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거소지로 바로 귀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내사항>

<2>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운영

○ 근로자를 기숙사 등에 자가격리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②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⑤ 개인물품 사용하기 ⑥ 건강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 근로자가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처리 및 임금지급 여부

○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기간 중 근로자의 휴가처리 및 임금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따르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유·무급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휴가 처리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 자세한 사항 관할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첨부> 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고용노동부장관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2020.3.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2020.3.2.